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

제406회 임시회
2023.01.17.(화)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홍식

충청북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23년 1월 4일

나. 회부일자 : 2023년 1월 5일

3. 제안이유

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제3항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해 소방설비등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4. 주요내용

가. 소방설비등 설치비용 지원의 범위(안 제4조 및 안 별표)

나. 지원대상 및 비용지원의 근거(안 제5조 및 제6조)

다. 지원신청 방법·절차 및 심의결과의 통지(안 제7조)

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8조)

마.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안 제9조)

바. 우선 지원 대상 및 지원 제외 대상(안 제10조)

사. 지원의 방법, 비용 정산 및 환수조치(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5. 검토내용

가. 조례 제정의 필요성

○ 화재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인 '화재예방강화지구'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를 관리하고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설비와 안전설비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18조(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시장지역
2.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5.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6.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8.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관서장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이하 생략>

제19조(화재의 예방 등에 대한 지원) ① ~ ② <생 략>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소방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설비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나. 조례 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기존에 화재예방과 소방시설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공포, 2022. 12. 1. 시행)됨에 따라,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됨.

○ 이에 따라 제정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523호, 2021. 11. 30. 제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를 지정·관리하고 소방설비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음.

○ 조문의 주요 내용을 보면,

-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
- 안 제2조는 “소방설비”, “안전설비”에 대한 용어의 뜻을 규정함.
- 안 제3조는 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 화재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4조부터 제6조는 소방설비등의 지원범위, 지원대상, 설치비용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7조는 소방설비등 설치비용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8조 및 제9조는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원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0조부터 제13조는 소방설비등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결정, 지원방법, 비용정산 및 중복지원에 대한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조례안 예고('22. 12. 9.~'22. 12. 29.)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

다. 조례 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례안은 총 13개 조문으로 도지사의 책무, 소방시설등 지원범위, 지원대상, 지원신청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문의 내용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 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함.

6. 검토의견

가. 「충청북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화재예방강화지구'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를 관리하고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설비와 안전설비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나. 현재 충청북도 내에 총 5개(청주 육거리종합시장, 사창시장, 충주 자유시장, 제천 중앙시장, 단양 구경시장) 전통시장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되어 있고, '22년도 영동 전통시장 화재, '21년도 청주 육거리종합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으므로, 현재 지정된 전통시장 외에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추가 지정을 검토하

여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감소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소방행정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도지사가 화재예방강화지구를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음에도 비용추계서에는 전통시장만을 대상으로 비용을 추계하였으므로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 지원대상과 지원시설에 대한 추가 예산확보에 대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